

파주시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

의안 번호	3-2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: 2002. 11. 30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우리 시 맑은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신고대상시설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적정 수거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어 방류하고 있으나,
-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은 사료작물 재배시비 외에는 사용처가 없고 대부분 비가림 시설이 없는 축사운동장이나 한모퉁이에 그대로 적치 보관하여 우기시 또는 여름철 수질오염 및 악취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으로,
-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축분에 소량의 음식물쓰레기를 혼합처리 함으로서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은 물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 자체전력으로 사용하고 최종처리되는 부산물에 대하여는 퇴비로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 금년말 준공예정 에 있음.
- 축분혼합처리시설은 국내 최초의 시설이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시설로서 운전초기부터 효율적인 설비가동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 유도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운전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절감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관리 계획을 추진함.

□ 주요골자

- 민간위탁의 범위를 축분혼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함.
- 수탁기관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.
-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.

□ 기타참고자료 : 민첩

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계획안

1. 시설현황

□ 시 설 명 : 파주시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

- 위 치 :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1039-4번지 일원
- 처리용량 : 80톤/일(음식물쓰레기 20톤 + 축분 60톤)
- 처리방식 : 중온혐기성소화
 - 공 장 동 : 지하1층, 지상2층(건축면적:1,775m²)
 - 가스저장동 : 건축면적 : 222.59m²
- 사 업 비 : 9,090백만원(양여금 7200, 도비 900, 시비 990)
- 사업기간 : '01. 5. 9 ~ '02. 12. 27

2. 민간위탁 추진 원칙

- 운영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적 위탁관리
- 시공중인 시설은 준공시점에 맞추어 위탁관리
- 신규수요와 관련 위탁사무는 가능한 한 Tunkey방식에 의한 위탁
 - 설계, 시공, 운영관리를 처음부터 일괄입찰 방식

3. 위탁사무의 범위

-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

4. 위탁기간

- 3년으로 하되 연장가능

5. 수탁가능 업체

- 관련법령
 -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

-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○ 수탁대상자

-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
-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자
-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·시공업자
- 수질환경법에 의해 등록한 방지사설업자
-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수질관리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
-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·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6. 수탁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

- 수탁업체의 기구 및 인력, 재정부담능력, 기술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-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

7. 민간위탁방법

- 위탁자와 수탁자간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.

8. 시직영시 문제점과 민간위탁 필요성

-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면 파주시가 인수받아 정상운전을 시작하여야 하나, 직영관리시 현재 혐기성시설에 대한 전문기술 및 인력이 없음.
- 직원의 순환보직등 잦은 인사이동이 이루어져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근무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기술축적이 미흡하고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, 혐오시설에 대한 근무기피 현상이 발생해 업무의욕 저하
- 운영관리 인력구조의 비효율적인 구성 즉 실제운전 요원보다 행정요원이 많아 이에 따른 인건비 과다지출로 경영혁신등을

통한 대폭적인 비용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.

- 특수한 전문지식 경험 및 기술을 요하는 수처리분야로 비전문성 공무원이 감독 및 운전 할 경우 효율저하와 운영관리 전문인력 부족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설비의 정상가동 및 유지관리가 어려움
- 운전초기부터 효율적인 설비가동시스템의 정착이 어렵고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예측하지 못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전에 어려움 봉착
-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 함.

9. 민간위탁의 효과

○ 시제정 부담 완화

- 축분혼합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주체를 시에서 민간으로 전환할 경우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시의 운영비 지원부담이 크게 완화됨.

※ 행자부 민간위탁 추진 지침에 의하면 운영수준 20 ~ 30% 절감 분석됨.

○ 운영관리 요원의 증원 소요 감축효과

- 위탁운영관리시 운영관리 분야에서 인력감축 등 자발적인 경영 효율성 노력이 강화됨

○ 환경개선효과 기대

- 시는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도·감독자로 전환, 시설의 정상운영과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·감독 기능을 강화 함으로써 지역의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

○ 경쟁력확보 및 기술개발촉진

- 기술 및 경험축적이 풍부한 전문수탁 기관 및 민간회사가 운영함으로써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, 지속적인

개발적용에 따른 운영효율 개선

- 공정특성에 적합한 운전기술개발 및 적용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내구년수 연장

○ 시설관리상 책임소재 명확

소관 실·과·소		환경보호과 ☎ 940-4491
입안자	환경보호과장	진 상 오
	환경시설담당	박 완 제
	담당자	김 달 수